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21. . . (제 회)	

코로나19 지원을 위한
고급오락장에 대한 재산세 감면안

제출자	고령군수 (재무과장)
제출연월일	2021. . .

코로나19 지원을 위한 고급오락장에 대한 재산세 감면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21. 6. .

제 출 자 : 고 령 군 수

1. 제안이유

- 가. 코로나19 감염병의 장기화 및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등으로 인한 영업적 피해가 큰 고급오락장은 일반과세 대상보다 높은 세율의 재산세가 적용되어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 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 및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라 의회 의결을 얻어 군세를 감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감면세목 : 재산세

○ 대 상 자

코로나19 방역강화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된 유흥시설의 소유자로서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제1호다목2) 및 제2호가목의 세율을 적용하는 납세의무자

○ 감면내용 : 중과세율의 50% 감면을 적용

- 당초세율

- 토 지 :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제1호다목2)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 건축물 : 지방세법 제111조1항2호가목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 감면추계액 : 8,165천원

- 2020년도 부과세액(16,330천원) × 감면율 50%적용

○ 기타사항

- 본 의결에 따른 감면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실시하되, 이미 납부한 지방세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환급한다.
- 「코로나19 지원을 위한 고급오락장에 대한 재산세 감면안」 의결 전후에 신청 또는 확인된 감면대상자에 대하여도 의결된 내용을 준용하여 감면한다.
- 감면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납세의무 성립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3. 관계법령 : 붙임

- 「지방자치법」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지방세 감면규모 등)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제1호 나목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2호

4. 기타 참고사항

- 행정안전부 코로나19 지원 지방세 감면 조례·의회 의결대상 개정안내(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1177, 2021. 5. 21.)

□ 「지방자치법」

제39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5. 기금의 설치·운용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없다.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적 상황, 긴급한 재난관리 필요성, 세목의 종류 및 조세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해당하는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신설 2010. 12. 27., 2013. 3. 23., 2014. 1. 1., 2014. 11. 19., 2017. 7. 26., 2020. 1. 15.>

1.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세 감면을 확대(지방세 감면율·감면액을 확대하거나 지방세 감면 대상·적용 대상자·세목·기간을 확대하는 것을 말한다)하는 지방세 감면
 2. 「지방세법」 제13조 및 제28조제2항에 따른 중과세의 배제를 통한 지방세 감면
 3.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의 구분 전환을 통한 지방세 감면
 4. 제177조에 따른 감면 제외대상에 대한 지방세 감면. 다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 제한 또는 금지로 인하여 영업이 금지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④ 제1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

- 제2조(지방세 감면규모 등) ⑤ 법 제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란 지진, 풍수해, 벼락, 전화(戰禍), 도괴(倒壞)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를 말한다.
- ⑥ 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지방세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지방세 감면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⑦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지방세 감면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직권으로 지방세 감면 대상자를 조사할 수 있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 나. 사회재난: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이하 "국가기반체계"라 한다)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제1급감염병"이란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하여야 하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으로서 다음 각 목의 감염병을 말한다. 다만, 갑작스러운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이 예견되어 긴급한 예방·관리가 필요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감염병을 포함한다.

인쇄 : 박미정 / 재무과 (2021-05-26 11:11:54)

"생활 속 거리두기, 거리를 두면 안전이 보입니다."



경 상 북 도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코로나19 지원 지방세 감면 조례·의회의결 대상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내

- 1.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1177(2021.5.24.)호와 관련입니다.
- 2. 코로나19로 인해 영업을 금지된 고급오락장 등에 대해 지자체 조례·지방 의회의결을 통한 지방세 감면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5.21.)를 통과하여 6월중 시행 예정입니다.
- 3. 위와 관련하여 안내사항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각 시·군에서는 조례 등 개정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코로나19 지원 지방세 감면 조례·의회의결 대상 개정안내 1부. 끝.

경 상 북 도 지 사

수신자 포항시장(재정관리과), 경주시장(세정과장), 경주시장(징수과장), 김천시장(세정과장), 안동시장(세정과장), 구미시장(세정과장), 구미시장(징수과장), 영주시장(세무과장), 영천시장(세정과장), 상주시장(세정과장), 문경시장(세무과장), 경산시장(세무과장), 경산시장(징수과장), 군위군수(재무과장), 의성군수(재무과장), 청송군수(재무과장), 영양군수(재무과장), 영덕군수(재무과장), 청도군수(재무과장), 고령군수(재무과장), 성주군수(재무과장), 칠곡군수(세무과장), 예천군수(재무과장), 봉화군수(재정과장), 울진군수(재무과장), 울릉군수(재무과장)

주무관 조상민 세정총괄팀장 장진석 세정담당관 전결 2021. 5. 25. 송홍식

협조자 주무관 김혜경 주무관 변영구

시행 세정담당관-8032 (2021. 5. 25.) 접수 재무과-11660 (2021. 5. 25.)

우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경북도청 / http://www.gb.go.kr

전화번호 054-880-2209 팩스번호 054-880-2190 / chosang8355@korea.kr / 비공개(5)

지역균형 뉴딜은 미래에 대한 약속, 새로운 기회를 만드는 일

문서관리카드 재무과-11660 1/1

□ 고급오락장 개요

- (개요) 지방세관계법상 고급오락장으로 분류되어, 취득세와 재산세 과세시 중과세율이 적용되며, 감면대상에서 제외(지법§13⑤, 지특법§177)
- (유형) ^{①②③④} 유흥주점과 ^{①②⑤} 무도장으로 세분, 세부요건 모두 충족 限 적용

(기본요건) ①식품위생법상 유흥주점영업* 허가 + ②영업장 면적 100㎡↑
 *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 (유흥주점) ③유흥접객원을 두고, ④별도 구획된 객실* 요건 충족
 * 객실 5개↑ or 객실 면적이 전체 면적의 50% 이상
- (무도장) ⑤춤을 출 수 있도록 별도 무도장 설치(나이트 등)

□ 집합금지 유흥시설(6종)의 고급오락장 해당 여부

6종의 집합금지 유흥시설* 中 일정 요건을 모두 충족한 유흥주점에 한하여 고급오락장이라고 볼 수 있음
 *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감성주점, 헌팅포차, 홀덤팝(Holdem Pub)

- (유흥주점) 접객원을 두고 술을 파는 영업장(노래+술+도우미+춤)
 - 일정 요건을 갖추는 경우 限*, 고급오락장(유흥주점) 해당
 * 영업장 면적 100㎡↑ & 유흥접객원 有 & 객실(5개 또는 전체면적 1/2 이상)
- (그 외 5종) 유흥주점 허가대상 아니므로 고급오락장 미해당
 - (단란주점) 단란주점으로 허가, 술 마시고 노래를 부르는 영업장
 * 식품위생법상 별도로 단란주점을 유흥주점과 별도의 대상으로 규정
 - (콜라텍) 일반음식점 허가를 받고, 술 판매없이 춤을 추는 영업장
 ※ 별도 휴게공간에서 술을 파는 경우라도 유흥주점영업허가를 받지 않는 이상 미해당
 - (감성주점·헌팅포차) 일반음식점 허가를 받고, 별도의 무대도 없으며, 술을 마시면서 테이블 사이에서 춤을 출 수 있는 영업장
 - (홀덤팝) 일반음식점 허가, 카드게임을 즐기며 술을 마시는 장소